




LED 거울

I 사례 개요

- 사 례 번 호: NY N358153 (2026.02.20.)
- 쟁 점 사 항: 원산지 표시를 위한 원산지 판정
- 최종 수출국: 중국
- 최종 원산지: 태국



II 사실관계

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조명, 김서림 방지, 터치 제어 기능을 갖춘 가정용 벽걸이형 전기식 거울 	
재료	 태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플로트 유리 시트
	 중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알루미늄 프레임 일체형 LED 조명 배선 요소 김서림 방지 요소 터치 제어장치
Sourcing 및 공정 흐름도	<p>The diagram illustrates the sourcing and manufacturing process flow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Manufacturing 1 (Thailand)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STEP 1 유리 시트 제조 STEP 2 반사 코팅 적용 STEP 3 추적 번호 표시 Manufacturing 2 (China)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STEP 1 코팅 유리 시트 수입 STEP 2 시트 절단 및 마감 공정 수행 STEP 3 프레임, LED 조명 등 기타 부품 생산 STEP 4 최종 조립 및 검사, 포장 Export (China): 최종 수출 	
상세 공정	 태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플로트 유리 시트 제조 후 반사 코팅 적용 고유 추적번호 표시한 코팅 시트를 중국으로 수출
	 중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태국산 코팅 시트를 규격에 맞게 절단 연마 및 가장자리 마감 공정 후면 지정된 부분을 기능부 장착에 맞게 가공 중국산 알루미늄 프레임, 일체형 LED 조명, 배선 요소, 김서림 방지 요소, 터치 제어장치와 결합 최종 시험, 검사 및 포장

III 판정 결과

《CBP의 판정》

- ⊙ 태국에서 플롯트 유리에 반사 코팅을 적용하는 공정은 유리를 거울로 영구적으로 변형시킴
- ⊙ 중국에서 수행된 절단, 연마, 조립 등의 제조공정은 거울의 기능성을 향상시킬 뿐 거울의 명칭, 특성 및 용도를 실질적으로 변형시키지 않음

→ 원산지 표시 목적상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태국

IV 시사점

- ⊙ CBP는 거울류의 원산지를 판정할 때,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핵심 구성요소인 코팅 유리가 생산된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하는 경향이 있으며, LED 조명, 프레임과 같은 부품은 원산지 결정에 크게 고려하지 않음
- ⊙ 위 사례에서도 유리 시트는 태국에서 제조되고 코팅되어 거울로서 기능을 갖추었으며, 이후 수행된 제조공정은 단순하여 거울의 명칭, 특성 및 용도를 실질적으로 변형시키지 않으므로 핵심 구성요소를 생산한 태국을 원산지로 판정함

거울에 대한 CBP의 참고 판정 사례

물품명	액자형 거울
사례번호	NY N339907 (2024.05.30.)
쟁점사항	원산지 표시를 위한 원산지 판정
사실관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유리에 반사 층을 코팅하여 거울용 코팅 유리 생산 - 알루미늄 압출재 생산 • 캄보디아 또는 베트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국산 거울용 코팅 유리 및 알루미늄 압출재 수입 - 폴리스티렌 압출재, 종이 또는 중밀도 섬유판 백킹, 금속 하드웨어 생산 - 절단, 연마, 프레임 조립, 백킹 부착 및 금속 행거 체결 공정 수행
판결 결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CBP는 중국산 거울용 코팅 유리가 다른 구성 부품들보다 부피가 크고, 상품의 용도 및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핵심 구성요소라고 판정 • 베트남 또는 캄보디아에서 수행되는 조립공정은 단순하여 가공 전과 다른 명칭, 특성 및 용도를 부여하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판정